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-23호

「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1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의 지급 등(안 제4조)
- 라. 포상(안 제5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#### 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25dead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##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대한적십자사봉사회(이하 “봉사회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(하부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)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사업
2. 헌혈 및 헌혈권장, 보건, 안전에 관한 사업
3.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4.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사업
5. 적십자 회비모금과 관련된 사업
6.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
2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

3.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, 지급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적용한다.

제5조(포상)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「강릉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